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05

발의연월일: 2021. 6. 2.

발 의 자: 안병길 · 안민석 · 윤재옥

김선교・권성동・이종성

정운천 • 류성걸 • 이철규

권명호 · 김형동 · 유의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조성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의 부유식 해상풍 력사업과 같이 영해 외측의 먼 바다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해상풍 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렇듯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최대 3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업인들에 대한 별도

의 의견수렴 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점용·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의확인 절차에 있어, 점용·사용 신청자가 권리자 유무를 조사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운용됨에따라 권리자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리로서"를 "권리로서 「수산 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로, "한다)가"를 "한다)의 유무를 확인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 유무의 확인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청이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 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 준) ① ------제10조에 따라 점용 · 사용허가 를 하거나 점용 사용 협의 또 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 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권리로서 「수산업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 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하고,----------한다)의 유무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른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